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

시행일 : 2026. 7. 2.

관 계 법 령

□ 국민연금법 제105조 제1항

-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1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79조

-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개요)	5
제2조(지침의 목적)	5
제2조의2(정의)	5
제3조(기금운용 목적)	6
제4조(기금운용 원칙)	6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6

제2장 투자정책

제6조(장기 목표수익률)	9
제6조의2(위험한도)	9
제7조(기준포트폴리오)	9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9
제9조(복지사업)	9
제10조(목표 초과수익률)	10
제10조의2(목표요구수익률)	10
제11조(전술적 자산배분)	10
제12조(자산군 분류)	10
제12조의2(투자제한)	11
제13조(외환관리 정책)	11
제14조(벤치마크지수)	11
제15조(위탁운용)	12
제16조(자산별 세부투자지침)	12

제3장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제17조(책임투자)	12
제17조의2(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12
제17조의3(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12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8조(위험의 인식 및 측정)	13
제19조(위험의 관리)	13
제20조(내부통제)	14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21조(성과평가)	14
제22조(보상정책)	14

제6장 보칙

제23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15
제24조(보고 및 감사)	15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15
제26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15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지침의 개요)** ①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지침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서 현행 국민연금관련 법령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 ③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거래기관 등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이하 “기금운용관련자”라 한다)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관련법령 등의 허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 제2조(지침의 목적)** ① 이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과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 ② 이 지침은 운용목표, 투자정책, 윤리강령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위탁투자 관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 ③ 이 지침은 기금운용지배구조 등 내부적 운용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 ④ 이 지침은 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의 관리책임을 완수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2조의2(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이란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하지 못하는 손실 및 기금 명성의 실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말한다.
 2. “액티브운용”이란 벤치마크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말한다.
 3. “위탁운용”이란 기금운용에 있어 공단 외부의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에서 공단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6. “외환익스포저”란 환율의 변동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외환익스포저의 규모는 미달러화(USD)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 제규정의 순에 따른다.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치한다.(법 제101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102조제2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2. 기준포트폴리오 설정 및 점검 <2024.5.2.>
3.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4.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6. 기금운용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7.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결정
8.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주제안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9. 위탁운용 목표범위

10.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11.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심의
 12. 기금운용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사항
 1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자산 구성과 기금의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관련 법률안 기안
 2.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 작성 <2024.5.2.>
 3. 전략적 자산배분안 작성
 4.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작성
 5.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작성
 6.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평가)
 7. 기금운용체계 개선
 8. 기금운용 모니터링
 9. 기금운용위원회 의안 상정 및 위원회 운영
 10. 공단의 기금운용규정,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 지도감독
- ④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1.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투자 정책에 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2. 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 및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내역 점검 등 <2026.7.2.>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검토·결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 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 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 라.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 5.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검토
- 6.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
 - 가. 책임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 나. 책임투자 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 다. 책임투자 이행 관련 적용범위
 - 라.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및 변경
- 8.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⑥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기금운용본부 전체 및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기준, 정책제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1. 국민연금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 2. 국민연금기금운용 내·외부 성과평가보고서 검토
 - 3.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성과보상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 4.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성과보상에 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 ⑦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기준포트폴리오 및 전략적 자산배분 등 주요 기금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언 <2024.5.2.>
 - 2. 전술적 자산배분
 - 3. 투자의사결정과 이를 위한 연구 및 사후관리
 - 4.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
 - 5. 기금운용규정 작성,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 6.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
 - 7. 기금운용 성과평가(내부평가)
 - 8. 기금운용 현황의 보고와 공시
 - 9. 기금운용의 감사에 관한 사항
 - 10.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기금운용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장 투자정책

제6조(장기 목표수익률)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수익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목표수익률 수준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 전망 또는 재정안정 시나리오 등에 기반한 재정지표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2024.5.2.>

제6조의2(위험한도) ①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95%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의 조건부 기댓값(Conditional Value at Risk, CVaR)을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CVaR($\alpha=0.05$) $\geq$ -15%). <2024.5.2.>

②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기준포트폴리오 설정 시 정해진 위험자산(주식)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2024.5.2.>

③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극단손실(95%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의 조건부 기댓값), 5년 후 최저적립금 비율(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적립금 규모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금의 기댓값으로 나눈 비율), 연간손실확률(연간 운용수익률이 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미달위험(향후 5년 동안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024.5.2.>

제7조(기준포트폴리오) ①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장기 위험수준을 주식과 채권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이때 주식은 해외주식, 채권은 국내채권의 특성치를 적용한다. <2024.5.2.>

② 기준포트폴리오는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장기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하여 설정한다. <2024.5.2.>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5년마다 기준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단, 새로운 재정추계 또는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다. <2024.5.2.>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해외주식) 비중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5.2.>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의 공공부문에의 투자한도를 정하며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국채의 매입에 의한다.

제9조(복지사업) 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 ② 기금의 복지사업 대여이자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준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 ③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인 해당기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5년인 경우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이 이상이 되어야 함)

제10조(목표 초과수익률) ① 공단은 액티브운용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한 총 위험을 고려하여 기금 전체 목표초과수익률(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의 목표치)을 설정하며, 기금 전체 목표 초과수익률은 전통자산 목표초과수익률과 대체투자 목표초과수익률을 각각의 목표 투자비중으로 가중하여 산출한다.
- ③ 전통자산 목표초과수익률은 대체투자를 제외한 금융부문 전체의 목표 액티브위험(Active Risk, 실제 운용이 벤치마크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함)과 목표 IR(Information Ratio, 초과수익률을 액티브위험으로 나눈 값으로 액티브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곱으로 정한다.
- ④ 대체투자 목표초과수익률은 전통자산 목표초과수익률에 조정치(벤치마크가 반영하지 못하는 대체투자 고유 특성 등)를 가산하여 정한다.
- ⑤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목표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액티브 운용의 효율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초과수익률이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자산군별 목표초과수익률을 설정한다.

제10조의2(목표요구수익률) ① 공단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준포트폴리오의 장기 목표수익률, 재정추계에 적용한 예상수익률 및 종합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요구수익률(절대수익률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포트폴리오 점검 주기에 맞춰 점검한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전술적 자산배분) ① 전술적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며,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③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단은 전술적 자산배분을 할 때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산군 분류) ① 자산군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

자대상 자산군을 다변화 하는데 있으므로 기금은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에 나누어 운용한다.
- ③ 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제12조의2(투자제한) ① 기금은 제4조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산업군 또는 기업군에 대하여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제한의 대상 범위, 기준 등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13조(외환관리 정책) ① 외환관리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익스포저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② 외환관리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 2.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익률 제고
- 3. 대규모 환 손실로부터 기금 보호

- ③ 해외투자 및 외화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USD) 이외 통화로 표시된 해외채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100%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pm 10\%p$ 범위에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환율변동 시 수익률 방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외환익스포저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⑥ 외환익스포저가 특정 통화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통화구성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해외주식·해외채권은 벤치마크의 통화구성을 추종하고 해외대체투자는 통화블록별 범위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 ⑦ 공단은 직접 및 위탁운용을 통해 외환익스포저 내 통화구성 비중을 총 3.0%p 이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벤치마크지수) ① 벤치마크지수의 설정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③ 자산군별 세부 벤치마크지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기금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자산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⑤ 벤치마크지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다.
- ③ 공단은 위탁운용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위탁운용사에게 운용사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점진적 도입을 유도하여 향후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공단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 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⑦ 공단은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 ⑧ 공단은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운용사 선정, 관리 및 평가 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자산별 세부투자지침)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3장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 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 ②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항을 목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의견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 제17조의3(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 ②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⑤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 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공단은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⑦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8조(위험의 인식 및 측정) ①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 1.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통계적으로 산출한 값인 Value at Risk(VaR)로 측정할 수 있다.
 - 2. 신용위험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노출금액(Exposure), 예상손실(Expected Loss), 비예상손실(Credit VaR)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 3. 유동성위험 :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 4. 법규위험 :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보게 될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 5. 운영위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보이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말한다.
- ② 인식된 위험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해당 위험량은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의 관리) ① 공단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③ 공단 내에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리스크관리실을 두며, 리스크관리부문장은 기금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에게 보고한다.
- ④ 공단은 전략적 자산배분 및 액티브 위험 배분을 바탕으로 연단위로 총위험한도와 자산종류별 위험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실제 기금의 위험을 점검하여 설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와 설정된 위험한도

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위기(기금이 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 상황이 발전·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내부통제) ①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준법감시인을 둔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 및 관리
2.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
3. 기금운용 관련 준법교육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이사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업무

③ 공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등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제8조의 6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21조(성과평가) ① 운용성과의 평가는 기금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벤치마크와의 정량적 비교 평가 뿐 아니라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③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하 ‘국민연금연구원’이라 한다) 및 외부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을 준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전체에 대해서는 금액가중수익률을 병기한다. 다만, 자산의 투자조건 등 상황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포함한 총수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제22조(보상정책) ① 보상정책은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서 정하며,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① 윤리기준은 기금운용에 관련된 자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건복지부, 공단,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등 기구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 등을 포함한다.

③ 기금운용관련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Fiduciaries)로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진다. 따라서 기금운용관련자들은 오직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전문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윤리기준의 세부사항은 이 지침의 부속서인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 및 감사) ① 공단은 기금의 운용자산 및 위험관리 현황, 운용성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기준 및 내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공단의 감사는 매반기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또는 월간 자금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4. 그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업무설명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①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별표 5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종목 등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단은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금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인쇄물,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5.6.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 개정사항은 2015년 국고채 최초 선매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주식 의결권 행사”를 “주식 의결권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연금재정팀장”을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6.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채권 환헤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채권의 미국 달러화(USD)와 원화(KRW) 간 전략적 환헤지비율 목표는 2017년말 50%, 2018년말 0%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9.)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5.)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0.)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31.)

(시행일) 이 지침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5]에 따른 2021년도 연간공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30.)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6.)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9.)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9.)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28.)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9.)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3.)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6.)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2.)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31.)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9.)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7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제11조제2항 관련) <2024.5.31.>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전략적 자산배분 (SAA) 허용범위1)	±3.0	±7.0	±4.0	±0.5
전술적 자산배분 (TAA) 허용범위	±2.0	±5.0	±3.0	+2.0/-4.0
총 허용범위	±5.0	±12.0	±7.0	+2.5/-4.5

1)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목표비중으로 간주하고,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리밸런싱)

벤치마크지수(제14조제2항 관련) <2024.5.31.>

1.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customized tax rate) (맞춤화된 배당세율은 기금이 실제 적용받는 배당세율에 따라 산출한다)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NPS Customized Index (ex KRW, Partial-hedged(기타통화-USD), Unhedged(USD-KRW))
대체투자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customized tax rate) (맞춤화된 배당세율은 기금이 실제 적용받는 배당세율에 따라 산출한다) x w] +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x (1-w)] (W 비중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 성과평가시는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 방식을 적용
- ※ 대체투자 벤치마크 지수의 공모자산 조합 비중(w)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2. 제1호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편입할 개별 종목들의 모집단(Universe)을 정하고, 이 모집단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모집단 기준지수(Universe-based Index)방식에 따른다.

-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 편입대상

항 목	편입대상 조건
발행시 만기	1.5년 이상
투자대상등급	BBB+ 이상1)
발행잔액	300억원 이상
제외 대상	주식관련채권, 사모사채, 주가연계채권(ELN), 파생연계채권(DLS), 변동금리부채권(FRN), 후순위채2), 후후순위채, 옵션부채권3)

- 1)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편입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 말에 일괄적으로 유니버스에서 제외
- 2)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유니버스에 편입(단, 하이브리드 증권은 후후순위채이므로 제외)
- 3) 옵션부채권 중 Call, Put 또는 Call/Put 옵션부 은행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유니버스에 편입
- 4) 각 종목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유니버스에 편입(단, 국고채 선매출의 경우 대금납입일부터 유니버스에 편입)

2의2. 제1호 중 해외채권 벤치마크지수(NPS Customized Index)는 아래의 세부 섹터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

세부 섹터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조건
Treasury, Government Related, Securitized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ex-Corp ¹⁾	벤치마크지수 기준 따름
Corporate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 Corporate ¹⁾	
EMD(Local)	Bloomberg Barclays EM Local Currency Core ²⁾	BB- 이상
High Yield	Bloomberg Barclays Global HY Corporate Very Liquid ¹⁾	

- 1) Full-hedged(기타통화-USD), Unhedged(USD-KRW)
- 2) Unhedged(기타통화-USD, USD-KRW)
- 3) 벤치마크 내 세부 섹터 비중 및 이행계획은 중기자산배분안이 정한 바를 따름. 단, '20, '21년 각각의 연도말 벤치마크 목표비중 달성을 위해 매월(마지막 영업일 기준) 균등 (1/12)하게 이행

3. (삭제) <2024.5.31.>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제16조 관련)

1. 국내주식

- ①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② 국내주식의 내부운용은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며,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 ③ 국내주식의 위탁운용은 민간 기관의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투자 스타일을 다양화하며,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2. 국내채권

- ①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계열별(회사채)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일정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채권의 발행기관별, 계열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해외투자

- ① 해외투자의 목적은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② 해외투자시 외국의 우수 운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 ③ 장기적으로 기금성숙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분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여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의 현금화시 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④ 공단은 외환익스포저 관리현황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4. 대체투자

- ① 대체투자의 목적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② 대체투자는 액티브 프로그램 중 대체투자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024.5.31.>
- ③ 대체투자는 약정시점에서 일정기간 분산하여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약정한도를 부여한다.
- ④ 대체투자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 투자위원회와는 별도의 투자 의사결정기구(“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 ⑤ 대체투자는 세부투자계획 수립,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언을 참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공단은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단기자금

- ① 단기자금이란 연금급여 지급 또는 중장기 자산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② 원화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운용기간 3개월 이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 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균 미화 30억불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6. 대여거래

- ① 유가증권 대여거래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원칙(제17조 관련)

<원칙 1>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원칙 2> 국민연금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본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책임투자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검토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이행합니다.

<원칙 3> 국민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 채권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금운용의 여건 및 자산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도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원칙 5>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주활동 등을 통해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

<원칙 6> 국민연금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시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원칙 7>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 이행과정에서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공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기금운용 관련 거래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정보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합니다.

<원칙 8>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책임투자 관련 국제 기관투자자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원칙 9>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투자 원칙 및 지침, 책임투자 이행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공시 대상 정보(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공시 대상
월간공시	■ 조성·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국내·해외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 -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 - 해외채권 종목별 투자 현황 - 대체투자 투자 종목(펀드)별 투자 현황(유형, 위탁 펀드명, 금액 등) 및 대체투자 관련 통계치 ■ 책임투자 관련 현황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공시대상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다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경우 세부 반대사유 공시 제외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